

우리나라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유형별 주요내용 및 개선대책<6>

김임순, 최원욱, 한상욱
아태환경·경영연구원

목 차

1. 서론
2. 우리나라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연천과 이행제도
 - 가. 환경영향평가 도입제도에에서의 공간범위의 변화
 - 나. 환경영향평가 도입제도에에서의 주요내용의 변화 및 성과
 - 다. 행정·교통·개발 등에 관한 영향평가행에 의한 환경영향 평가 제도
3. 환경정책기본법 및 계획법령에 의한 사전환경성검토제도
 - 가. 사전환경성검토제도의 도입 배경 및 전망
 - 나. 사전환경성검토제도의 의의 및 발전
 - 다. 환경정책기본법령 체계와 사전환경성검토 제도
 - 라. 현행 사전환경성검토제도의 주요내용
 - 바. 건설사업의 환경영향조사·검토절차
4. 지방자치단체의 환경영향평가제도
 - 가.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위상변화와 지방자치단체의 요구증대
 - 나. 지방환경영향평가제도에 따른 문제점 및 해결 과제
 - 다. 지방환경영향평가의 제도의 방향
5. 지속성의 구현을 위한 새로운 전략환경영향평가
 - 가. 정책의 개층적 구조와 의사결정 체계
 - 나. 환경영향평가의 연계성과 SEA의 필요성
 - 다. 전략환경영향평가의 유형 및 접근방법
 - 라. 전략환경영향평가의 도입 실태와 기대효과
6. 현행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개선을 위한 대책방안
 - 가.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과제
 - 나. 사전환경성검토제도의 개선방안 및 향후과제
 - 다. 사전환경성검토제도구조에서의 전략환경영향평가의 도입
7. 결론

2) 사전환경성검토의 유형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에 규정된 사전협의대상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의 종류, 규모 및 협의 시기는 다음과 같다(표 3-9 참조).

〈표 3-9〉 사전협의대상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의 종류·규모 및 협의시기 시행령(제3조제 1항관련)

1. 행정계획

구 분	행정계획의 종류	협의시기
가. 국토·지역·도시의 개발	(1) 농어촌정비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마을정비구역의 지정 (2) 제주도개발특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광역시설 계획 (3)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폐광지역진흥지구의 지정 및 동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폐광지역환경보전계획 (4)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이 영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협의를 한 사업에 관한 계획을 제외한다)	구역 지정전 계획 확정전 지구 지정전 또는 계획 수립시 계획 수립시
나. 농공단지의 조성	(1)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의 지정	단지 지정전
다. 수자원 개발, 하천의 이용·개발	(1) 소하천정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2) 온천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온천개발계획	계획 승인전 계획 승인전
라. 체육시설의 설치 및 수련지구 조성	(1)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 (2) 청소년기본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수련지구조성계획	계획 승인전 계획 수립시

2. 개발사업

구 분	개발사업의 종류 및 규모	협의시기
가. 국토이용관리법 적용 지역 (산림법에 의한 산림을 제외 한다)	(1) 국토이용관리법 제6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농림지역에서의 사업계획 면적이 7,500제곱미터 이상인 것 (2) 국토이용관리법 제6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준농림지역에서의 사업계획 면적이 10,000제곱미터 이상인 것 (3) 국토이용관리법 제6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의 사업계획 면적이 5,000제곱미터 이상인 것	사업의 허가·인가 또는 승인전 사업의 허가·인가 또는 승인전
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적용지역	(1)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제한 구역에서의 사업계획 면적이 5,000제곱미터 이상인 것	사업의 허가·인가 또는 승인전
다. 자연환경보전법 및 조수보호 및 수련에관한법률 적용지역	(1) 자연환경보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생태계보전지역에서의 사업계획 면적이 5,000제곱미터 이상인 것 (2) 자연환경보전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생태계보전지역 및 동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시·도생태계보전지역에서의 사업계획 면적이 5,000제곱미터	사업의 허가·인가 또는 승인전 사업의 허가·인가 또는 승인전

구 분	개발사업의 종류 및 규모	협의시기
	이상인 것 (3) 자연환경보전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완충지역에서의 사업계획 면적이 7,500제곱미터 이상인 것 (4)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조수보호구역에서의 사업계획 면적이 5,000제곱미터 이상인 것	사업의 허가·인가 또는 승인전 사업의 허가·인가 또는 승인전
라. 산림법 적용지역	(1) 산림법 제16조제1항제1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공익임지에서의 사업계획 면적이 10,000제곱미터 이상인 것 (2) 공익임지의 산림에서의 사업계획 면적이 50,000제곱미터 이상인 것	사업의 허가·인가 또는 승인전 사업의 허가·인가 또는 승인전
마. 자연공원법 적용 지역	(1) 자연공원법 제1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연보존지구에서의 사업계획 면적이 5,000제곱미터 이상인 것 (2) 자연공원법 제1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연환경지구에서의 사업계획 면적이 7,500제곱미터 이상인 것	사업의 허가·인가 또는 승인전 사업의 허가·인가 또는 승인전
바. 습지보전법 적용 지역	(1) 습지보전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습지보호지역에서의 사업계획 면적이 5,000제곱미터 이상인 것 (2) 습지보전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습지주변관리지역에서의 사업계획 면적이 7,500제곱미터 이상인 것 (3) 습지보전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습지개선지역에서의 사업계획 면적이 7,500제곱미터 이상인 것.	사업의 허가·인가 또는 승인전 사업의 허가·인가 또는 승인전 사업의 허가·인가 또는 승인전
사. 수도법, 하천법, 소하천정비법 및 지하수법 적용 지역	(1) 수도법 제3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광역상수도가 설치된 호소의 경계면(계획 홍수위를 기준으로 한다)으로부터 상류로 1킬로미터 이내인 지역(팔당댐 상류의 남한강·북한강의 경우에는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특별대책지역 1 권역으로서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변구역의 지정대상이 되는 지역의 경계선 이내의 지역으로 한다)에서의 사업계획 면적이 7,500제곱미터(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5,000제곱미터) 이상인 것 (2) 하천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하천구역에서의 사업계획 면적이 10,000제곱미터 이상인 것 (3) 소하천정비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소하천구역에서의 사업계획 면적이 7,500제곱미터 이상인 것 (4) 지하수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보전구역에서의 사업계획 면적이 5,000제곱미터 이상인 것	사업의 허가·인가 또는 승인전 사업의 허가·인가 또는 승인전 사업의 허가·인가 또는 승인전 사업의 허가·인가 또는 승인전

비고

1. 사전협의대상인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 면적의 30퍼센트 이상을 변경하는 경우를 사전협의 대상에 포함
2. 사전협의대상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협의하지 아니함
3. 산림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조림·육림·벌채 및 병해충 구제 등 산림사업과 사방사업법에 의한 사방사업은 사전협의대상에서 제외함
4. 제2호 가목의 지역중 농림지역 및 준 농림지역에서의 농어촌 정비법에 의한 농어촌정비사업에 대하여는 협의대상의 규모를 환경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음

사전협의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야 할 행정계획은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고 있는 바 다음과 같다(표 3-10 참조).

〈표 3-10〉 사전협의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야 하는 행정계획(제4조 관련)

구 분	행정계획의 종류
가. 국토·지역·도시의 개발	(1) 국토이용관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국토이용계획(동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 또는 준도시지역을 농림지역·준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변경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지정 (3)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광역개발권역의 지정, 동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광역개발사업계획,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촉진지구의 지정 및 동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촉진지구개발계획 (4) 농어촌정비법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한계농지정비지구의 지정
나. 산업단지·유통단지의 조성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산업단지의 지정 및 동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산업단지의 지정 (2)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유통단지의 지정
다. 에너지 개발	(1)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전원개발사업예정구역의 지정 (2)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사업실시계획
라. 교통시설의 건설	(1) 도시철도법 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한 노선별 도시철도기본계획 (2) 고속철도건설촉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고속철도건설예정지역의 지정 (3) 공공철도건설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철도의 건설·개량사업실시계획 (4)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신공항건설예정지역의 지정 (5) 신항만건설촉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신항만건설예정지역의 지정
마. 하천의 이용·개발 및 해양 개발	(1) 하천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정비기본계획 (2) 어항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어항시설계획중 기본계획
바. 산지개발 및 골재채취	(1) 산림법 제90조의4의 규정에 의한 채석단지의 지정 (2) 골재채취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골재채취단지의 지정 (3) 자연공원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도립공원계획 및 동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군립공원계획
사. 관광단지의 개발 및 국방·군사시설의 설치	(1) 관광진흥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개발기본계획·권역별관광개발계획, 동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등의 지정 및 동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등의 조성계획 (2) 청소년기본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 수련지구의 지정 (3) 국방·군사시설사업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국방·군사시설사업의 실시계획

중전의 국무총리훈령과 환경정책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전환경성검토 적용대상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표 3-11 참조)

〈표 3-11〉 국무총리훈령 및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발사업

국무총리 훈령(적용대상)			환경정책기본법(적용대상)		
적용법령	사업종류	사업규모	적용법령	사업종류	사업규모
1. 국토이용 관리법	자연환경보전지역	5,500m ² 이상	1. 국토이용 관리법	자연환경보전지역	5,000m ² 이상
	농림지역 준농림지역 * 화장장·납골당	7,500m ² 이상 10,000m ² 이상 10,000m ² 이상		농림지역 준농림지역	7,500m ² 이상 10,000m ² 이상
2. 도시 계획법	보전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7,500m ² 이상 10,000m ² 이상	-	-	-
3. 수도법	상수원보호구역	2,500m ² 이상	2. 수도법	광역상수도 설치 (공동주택의 건설)	5,000m ² 이상
				광역상수도 설치지역 (공동주택의경우제외)	7,500m ² 이상
4. 산림법	보전임지를 전용하는 경우 특수개발지역의 지정	7,500m ² 이상	3. 산림법	공익임지	10,000m ² 이상
		제한없음		공익임지의 산림 (생산임지, 준보 임지)	50,000m ² 이상
			4. 개발 제한 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	5,000m ² 이상
			5. 자연환경 보전법	생태계보전지역 임시	5,000m ² 이상
				생태계보전지 역사, 도	5,000m ² 이상
				생태계 보전지역자연	5,000m ² 이상
				유보 지역	5,000m ² 이상
			6.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	조수보호구	5,000m ² 이상
			7. 자연 공원법	자연보존지구	5,000m ² 이상
				자연환경지구	7,500m ² 이상
			8. 습지 보전법	습지보호지역	5,000m ² 이상
				습지구변관리지역	7,500m ² 이상
			9. 하천법	하천구역	10,000m ² 이상
			10. 소하천 정비법	소하천구역	5,000m ² 이상
			11. 지하수법	지하수보전구역	5,000m ² 이상

국무총리훈령으로부터 환경정책기본법으로 사전환경성검토를 위한 사전협의 규정의 근거가 바뀐에 따라 사전협의대상의 변화내용은 첫째,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의 환경성 검토 대상 개발사업이 5,500m² 이상에서 5,000m² 이상으로 강화되었고, 둘째, 개발사업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한 생태계보전지역,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수보호구역,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보존지구 등, 습지보존법에 따라 습지보호 지역, 하천법에 의한 하천구역, 소하천정비법에 의한 소하천구역, 지하수법에 의한 지하수보전구역에서의 일정규모 이상의 지역이 사전환경성검토를 받도록 되므로서 대상범위가 대폭 확대되었으며, 셋째, 행정계획의 범위도 종전의 훈령에서는 국토이용관리법, 도시계획법, 수도법, 산림법 등에 의한 행정계획이 환경성검토 대상이었으며 새로운 환경정책기본법에서는 종전의 대상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보전녹지, 자연녹지지역내 사업이 반영되지 않았으나 전체적으로 대상은 대폭 확대되었다. 개발과 환경보전의 조화는 의사결정의 초기단계에서부터 검토되어야 한다는 점과 도시지역이 환경문제의 진원지이고 대부분의 인구가 도시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음을 볼 때 의사결정의 초기단계인 도시정책 및 도시계획 등이 사전협의대상으로 추가되므로서 사전협의제도 운영의 실효를 도모할 수 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개정내용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유감이다.

2002년 2월 9일에는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중 제3조(사전협의대상 및 협의방법) 1항 관련 별표2(사전협의대상 및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의 종류·규모 및 협의시기)의 본문과 비교란의 개정과 제4조의 2(조치결과의 통보)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제2항을 신설하는 개정이 있었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이 세가지로 요약된다.

(1) 사전환경성검토대상규모 미만으로 시행하는 개발사업이라 하더라도 연접해서 계속 개발면적을 확대하는 때에는 과거 10년동안 개발한 면적과 추가 개발하고자 하는 사업계획 면적의 합이 최소 사전환경성검토대상 면적의 130%이상되는 때에는 사전환경성검토를 받도록 하였다.

- 종전 규정은 준농림지역의 경우 1만m²이상의 개발사업을 사전환경성검토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대규모 사업이라도 1만m²미만으로 분할해서 개발하면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에서 제외된다.

- 이에 따라 사전환경성검토시 환경관서의 반대로 사업승인을 얻기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은 이러한 법령상의 미비점을 약용해서 소규모로 분할 시행하는 방법으로 사전환경성검토를 회피하는 등의 사례가 있었다.

- 그러나 이와 같이 소규모로 분할 시행하는 사업도 과거 10년동안 개발사업에 대

한 면적과 추가 개발하고자 하는 면적의 합계가 최소 사전환경성검토대상면적의 130%이상 되는 때에는 사전환경성검토를 받아야 한다.

(2) 사업승인기관의 장은 사전환경성검토 협의의견을 반영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내용 및 사유를 환경관서의 장에게 의무적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는 사업승인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전환경성검토 협의의견을 반드시 반영토록 하는 한편, 환경관서의 장이 협의내용 미반영 사유를 검토하여 타당성이 없을 때에는 다시 반영토록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으로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내용의 이행 및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3) 둘이상 용도지역에 걸쳐 시행되는 개발사업에 대한 사전환경성검토대상 여부 판단기준을 정하고, 산림법 적용지역에서의 사전환경성검토대상을 명확히 하는 등 제도 운용상의 미비점이 개선되도록 하였다.

환경정책기본법에 사전협의에 관한 근거를 두기 이전까지의 사전협의 대상을 국무총리훈령에 의한 10개 행정계획과 개발사업 그리고 개별법에 의해 환경부 및 지방환경관서가 협의한 행정계획은 8개 부처소관의 32개 법에 의한 62개이었다. 그러나 환경정책기본법에 사전협의 근거가 마련되고 동시행령의 개정(2000. 8. 17) 이후에는 종래 개별법에 따라 환경부서와 사전협의를 하지 아니하던 농어촌정비법 등 9개 법률에 의한 행정계획이 추가되었다. 또한 개별법에 따라 사전협의를 하여오던 행정계획 중에서 국토이용관리법 등 21개 법률에 규정된 29개 행정계획에 대하여는 사전협의시 첨부하여야 할 구비서류의 종류를 정하였다. 아울러 환경부서와의 협의대상에 20개 개발사업이 추가되었다. 이와는 별개로 30개 개별법령에 의한 51개 행정계획이 협의대상이 되고 있다. (표3-12 참조)

〈표 3-12〉

국무총리훈령 및 개별법령(기존)		개별법령 및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현재)	
국무총리훈령		구비서류가 추가된 29개 행정계획	
관계법령	협의내용	관계법령	협의내용
국토이용 관리법	○자연환경보전지역(법 제6조) ○농림지역(법 제6조) ○준농림지역(법 제6조) ○상기지역외 화장장, 납골당	국토이용 관리법	○국토이용계획(도시지역, 준 도시지역, 농림 지역, 준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변경하는 경우 제외)(법 제2조)
도시계획법시	○보전녹지지역(제15조)	택지개발촉진법	○개발촉진지구개발계획(법 제3조)

국무총리훈령 및 개별법령(기존)		개별법령 및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현재)		
국무총리훈령		구비서류가 추가된 29개 행정계획		
관계법령	협약내용	관계법령	협약내용	
행령	○자연녹지지역(제15조)	지역균형 및 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	○광역개발권역의 지정(법 제4조)	
수도법	○상수원보호구역(제15조)		○광역개발계획수립(법 제5조)	
산림법	○보전임지(제18조) ○특수개발지역(제21조)		○개발촉진지구지정(법 제11조) ○개발촉진지구개발계획	
개별법령		농어촌정비법	○한계농지정비지구지정(법제79조)	
관계법령	협약내용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산업단지지정(국가, 지방)	
국방·군사시설 설치에 관한 법률	○국방·군사시설설치사업실시계획승인(법 제4조)	유통단지개발 촉진법	○유통단지지정(법 제5조)	
관광진흥법	○관광개발기본계획수립(법 제22조의 3) ○권역별관광개발계획(법 제22조의 4) ○관광(단지) 지정(법 제23조) ○관광(단지) 조성계획수립승인(법 제24조)	자원개발에 관한 특별법	○자원개발사업예정구역의 지정(법 제11조)	
		한국가스공사법	○사업실시계획법(법 제16조의 2)	
택지개발 촉진법	○주택건설종합계획수립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	도시철도법	○노선도시철도기본계획(법 제3조의 2)	
고속철도건설 촉진법	○고속철도건설기본계획수립(법 제3조) ○고속철도에예정지역의 지정(법 제5조)	고속철도건설 촉진법	○고속철도건설예정지역의 지정(법 제5조)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 확정(법 제6조) ○도시철도기본계획 확정(법 제3조의 2)	공공철도건설 촉진법	○공공철도의 건설·개발사업실시 계획	
도시철도법	○공공철도건설·개발사업실시계획승인(법 제3조)	수도권신공항 건설촉진법	○수도권신공항건설예정지역지정(법제3조)	
		하천법	○하천정비기본계획(법 제17조)	
주택건설 촉진법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사전결정(법 제32조의 4)	어항법	○어항시설계획중 기본계획(법 제7조 2)	
지하수법	○지하수관리기본계획수립(법 제6조) ○지하수보전구역지정(법 제12조)	산림법	○채석단지의 지정(법 제90조 1)	
		골재채취법	○골재채취단지 지정(법 제34조)	
특정다목적댐법	○다목적댐건설 기본계획수립(법 제5조) ○실시계획수립(법 제5조의 2)	자연공원법	○도립공원계획(법 제11조) ○군립공원계획(법 제12조)	
		골재채취법	관광진흥법	○관광개발기본계획수립(법 제47조) ○권역별 관광개발계획(법 제47조) ○관광(단지) 지정(법 제50조) ○관광(단지) 조성계획(법 제52조)
				청소년기본법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계획의 입안 및 결정(법 제7조 및 8조)	국방·군사시설사업에 관한 법률	국방군사시설사업의 실시 계획(법 제4조)	
지역균형개발 및중소기업육성에 관한법	○광역개발권역의 지정(법 제4조) ○광역개발계획수립(법 제5조) ○개발촉진지구지정(법 제11조)			

국무총리훈령 및 개별법령(기존)		개별법령 및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현재)	
국무총리훈령		구비서류가 추가된 29개 행정계획	
관계법령	협약내용	관계법령	협약내용
수도권정비계획법	○개발계획수립(법 제14조) ○수도권정비계획수립(법 제4조)	사전협의대상으로 추가된 10개 행정계획	
국토건설종합계획법	○특정지역의 지정(법 제6조) ○특정지역계획		
도시계획법	○도시기본계획의 수립(법 제10조의 2)	관계법령	협약내용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유통단지개발종합계획수립(법 제4조) ○유통단지지정(법 제5조) ○유통단지개발실시계획승인(법 제11조)	농어촌정비법	○마을정비구역의 지정(제32조)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수도권신공항건설예정지역지정(법 제3조) ○신공항건설기본계획수립	제주도개발특별법	○광역시설계획(제8조)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산업단지지정(국가, 지방)	관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	○관광지역진흥지역의 지정(제3조) ○관광지역환경보전계획(제5조)
자연공원법	○국립공원지정(법 제4조) ○도립공원지정(법 제5조) ○국립공원계획의 결정(법 제10조) ○도립공원계획 결정(법 제11조) ○군립공원계획결정(법 제12조)	사회간접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제10조)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농공단지의 지정(제 8조)
		소하천정비법	○소하천정비종합계획(제6조)
		온천법	○온천개발계획(제7조)
공유수면관리법	○공유수면점용 및 사용허가(법 제4조)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사업계획(제12조)
공유수면매립법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수립(법 제3조의 2) ○공유수면매립면허(법 제4조)	청소년기본법	○수련지구조성계획(제41조)
항만법	○항만기본계획 수립(법 제5조)	국토건설종합계획법	○특정지역의 지정(제6조) ○전국계획(제15조) ○특정지역계획(제16조) ○도계획(제17조) ○시·군계획(제18조)
신항만건설촉진법	○신항만건설기본계획수립(법 제3조) ○신항만건설예정지역지정(법 제5조)		
전기사업법	○전기설비의 설치허가(법 제29조)		
전원개발특별법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승인(법 제5조) ○전원개발사업예정지구지정(법 제11조)	수도권정비계획법	○수도권정비계획(제4조)
한국가스공사법	○사업실시계획승인(법 제16조의 2)	국토이용관리법	○토지수급계획(제6조의 2)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공업배치기본계획 수립(법 제3조) ○외국인기업전용단지의 지정(법 제35조의 3)	도시계획법	○도시발전종합대책(제4조) ○도시기본계획(제10조) ○광역도시계획(제12조) ○도시계획(제18조)
			도시개발법
관광지역개발	○관광지역환경보전계획수립(법 제5조)		

국무총리훈령 및 개별법령(기준)		개별법령 및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현재)	
국무총리훈령		구비서류가 추가된 29개 행정계획	
관계법령	협약내용	관계법령	협약내용
지원에관한특별법			○개발계획 변경(제14조)
		도시재개발법	○개발계획 (제3조) ○도시재개발 구역의 지정(제4조)
송유관사업법	○송유관건설기본계획수립(법 제3조) ○송유관사업의 허가(법 제5조) ○송유관공사계획의 인가(법 제13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및관리에관한 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제3조)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제10조)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학교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법 제4조)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 개선을위한특별조치법	○주거환경개선지구의 지정(제3조) ○주거환경개선계획(제6조)
농어촌정비법	○농어촌정비종합계획수립(법 제4조) ○생활환경영비구역지정(법 제32조)		
	○한계농지정정비지구지정(법 제79조)	농어촌정비법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종합계획(제3조) ○농업기반정비사업기본계획(제7조)
초지법	○초지조성지구지정(법 제3조)	농어촌주택개발촉진법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종합계획(제3조)
		농어촌환경개선사업계획(제5조)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	○폐광지역진흥지구의 지정(제3조)
		유통단지개발촉진법	○폐광지역환경보전계획(제5조) ○유통단지개발종합계획(제4조)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 법률	○공업배치기본계획(제3조) ○외국인 기업전용단지의 지정(제35조의 3)
		전원개발에관한특별법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제5조)
		원자력법	○원자력진흥기본계획(제8조의 2)
		교통체계효율화법	○국가간 교통망계획(제5조)
		고속철도건설촉진법	○고속철도에정지역의 지정(제5조)
		수도권신공항 건설촉진법	○신공항건설기본계획(제4조)
		항공법	○공항개발기본계획(제89조)
		항만법	○항만기본계획(제5조)
		신항만건설촉진법	○신항만건설기본계획(제3조)
		지하수법	○지하수관리기본계획(제6조) ○지하수보전구역지정(제12조)
		하천법	○수자원장기종합계획(하천법)
		소하천정비법	○소하천정비 시행계획(제8조)

국무총리훈령 및 개별법령(기준)		개별법령 및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현재)	
국무총리훈령		구비서류가 추가된 29개 행정계획	
관계법령	협의내용	관계법령	협의내용
		공유수면매립법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제4조)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댐건설예정지역의 지정(제5조) ○기본계획(제7조)
		산림법	○특수개발지역의 지정(21조)
		골재채취법	○골재채수급기본계획(제5조)
		연안관리법	○연안통합관리계획(제5조) ○연안관리지역계획(제8조) ○연안정비계획(제13조) ○연안정비사업실시계획(제17조)
		어항법	○어항시설계획(제7조)

비고 : 동 대상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기본계획수립등에 관하여는 2000년 동법개정시 환경성검토를 하도록 반영하고 필요한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과 협의토록하고 있는 점에서 여타 협의대상사업과 차이가 있다. 환경부, 개발사업 사전환경성검토 편람 참조

다음호에 계속